선박검사관련 규정 등 제·개정 사항 (2004년 4/4분기)

해양수산부 제공

▣ 미수검선박발생방지및과태료부과업무 지침 개정 (해양수산부 해사기술 담당관실-1955, 2004. 9. 7)

○ 개정사유

법원에 압류된 선박에 미수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검사가 경과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, 선박운항 및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압류선박의 소유자에게 압류기간중 발생한 미수검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항이 불가한 선박으로서 검사미필로 인한 안전상 위험이 적다는 점과 미수검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때 불합리하여 이를 개정

○ 주요내용

가. 과태료부과기간은 과태료 부과대상선박의 경매등의 법원 강제집행여부를 파악토록 함 (II-3-다)

나. 위반일수 산정시 강제집행개시일로부터 선박검사신청일까지 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함 (III-3 단서조항 신설)

○ 시행일 : 2004. 9. 7

▣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-61호, 2004. 9. 21)

○ 개정사유

개정된 SOLAS 2-2장 및 FSS CODE(국제화재안전장치코드)를 국내규정에 반영하고, 비상탈출용 호흡구, 기관실 국부소화장치, 튀김요리설비 소화장치등의 설비요건을 신설함

○ 주요내용

가.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에 비치하는 휴대식소화기의 용기는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(제29조의2)

나. 연해구역 이하를 운항하는 카페리여객선에 대한 소방원장구의 비치 완화 (제5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)

-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 : 2조
- 차량구역이 없거나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
  · 총톤수 100톤이상의 여객선 : 1조
  · 총톤수 100톤미만의 여객선 :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

다. 국내항해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소방원 장구의 비치 완화 (제72조제2항)
- 폐위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 : 2조
- 개방된 차량구역이 있는 경우
· 총톤수 100톤이상 : 1조
· 총톤수 100톤미만 : 도끼 1개 및 구명줄 1개

라. 총톤수 500톤이상의 국제항해여객선 및 2000톤이상 화물선의 기관구역에는 내연기관, 보일러, 소각기, 청정기 등을 국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(제50조의2, 제69조의2)

○ 시행일 : 2004. 10. 20

▣ 고속선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고시 제2004-64호, 2004. 10. 6)

○ 개정사유

개정된 국제고속선 코드(2000 HSC CODE)의 개정사항을 국내반영하고 국내운항 고속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임의기준이었던 고속선기준을 강제 적용하도록 함

○ 주요내용

가. 종전의 임의적용에서 최고속력 25노트 이상 국내항해 고속선에 대하여 강제 적용토록 함 (제2조)

나. 국내항해 고속선의 시설기준을 정함 (제3조)

다. 국제항해 고속선은 국제고속선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국내고속선은 이를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(제3조)
- 선체, 상갑판 등은 화재에 취약한 FRP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
- 자동차용 안전벨트도 인정
- 무선설비는 선박안전법 관련기준 적용 등

라. 개정된 국제고속선코드 내용 국내 수용 (별표1, 별표2)
- 부력확보를 위한 선수문, 출입문, 창문, 화물창구, 통풍통, 방수구 등에 대한 수밀 및 풍우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
- 다동선의 복원성기준 신설
- 선수부 거주구역 설치 금지

○ 시행일 : 2004. 11. 6

▣ 선박설비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-66호, 2004. 10. 19)

○ 개정사유

선박의 거주시설을 현대인의 체형에 맞도록 개선하고, 실습생의 거주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기준의 불합리점 및 미비점 보완

○ 주요내용

가. 여객실의 높이를 현대인의 체구에 맞게 개정 (제7조)
- 원양구역 (2m) → 현행과 동일
- 근해구역이하(1.8m) → 2.0m이상

나. 거주제실등의 높이규정을 현대인의 체구에 맞게 개정 (제21조)
- 화물선 : 1.8~2.0m이상 → 2.0m이상
- 어선 : 1.6~1.7m이상(45m미만선박) → 1.8m이상
- 어선 : 1.8~1.9m이상(45m이상선박) → 1.9m이상

다. 조타실의 높이규정을 현대인의 체구에 맞게 개정 (제33조)

- 총톤수 200톤 미만 : 1.6m → 1.8m
- 총톤수 3,000톤 미만 : 1.8~2.0m 이상 → 2.0m이상
- 어선 : 1.75이상 → 1.8m이상

라.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를 150톤미만의 여객선에도 설치토록 하고, 설치시기를 앞당김 (제108조의5제1항 및 부칙 제4조)

마. 평수구역 항행 및 평수구역으로부터 1시간미만의 연해구역 항행 카페리선박에 대한 닻 설치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완화함 (제59조)

바. 현존선의 레이다반사기 설치요건을 신설함 (부칙 제4조)

○ 시행일 : 2004. 11. 18

〈AIS 설치 대상 시기〉

▣ 신조선

선 종	국제항해	국내항해
여 객 선	· 모든 해운법상 여객선 · 150톤이상 유 · 도선	
일반화물선	300톤이상	500톤이상
예선, 유조선, 위험물운반선	50톤이상	
어 선	45m이상	

▣ 현존선

선 종	국제항해		국내항해	
	대 상	설치시기	대 상	설치시기
여 객 선	150톤이상 여객선	2003. 7. 1	· 모든 해운법상 여객선 · 150톤이상 유 · 도선	2005. 12. 31
유 조 선	300톤이상		※ 아래 유조선 참조	
일반화물선	300톤~50,000톤	2004. 12. 31	500톤이상	2008. 7. 1
	50,000톤이상	2004. 7. 1		
예선, 유조선, 위험물운반선	-	-	50톤~150톤	2008. 7. 1
	-	-	150톤~500톤	2007. 7. 1
	-	-	500톤~3,000톤	2006. 7. 1
	-	-	3,000톤이상	2004. 12. 31
어 선	-	-	45m이상	2008. 7. 1

▣ 선박기관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-67호, 2004. 10. 20)

○ 개정사유

산적화물선의 화물창 침수경보장치 및 배수펌프 설치에 대한 기준이 국제협약 SOLAS에 신설됨에 따라 동 협약사항을 수용하고 현행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

○ 주요내용

가. 500톤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에 침수경보장치 및 배수펌프장치 설치기준 신설 (제184조)

나. 각 화물창의 바닥으로부터 0.5미터 높이 및 화물창 깊이의 15%(최대 2미터) 위치에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, 조타실에는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(제185조)

다. 선수격벽 전부밸러스트탱크와 화물창전방 구역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, 조타실 또는 기관실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함 (제186조)

○ 시행일 : 2005. 1. 20

▣ 2톤미만낚시어선의검사업무처리요령 개정 (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-4301, 2004. 11. 8)

○ 개정사유

2톤미만 낚시어선의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검사의 종류 및 그 변경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아 최대탑재인원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객 불편이 있어,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○ 주요내용

가. 2톤미만 낚시어선을 하고자 할 경우 적용되는 검사(정기검사)를 명확히 함 (제1.4.1 관련)

나. 2톤미만 낚시어선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(제1.4.2 관련)

다. 선박검사증서에 비치된 신호탄은 낚시어선 소유자가 스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삽입 (제2.3.2 관련)

○ 시행일 : 2004. 11. 8